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6.까지 신고해야

= 5. 12.(화) ~ 5. 16.(토) 거소투표신고,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
= 이사 등으로 변경된 주소지에서 투표할 사람은 5. 12.(목)까지 전입신고 =

5월 12일부터 5월 16일까지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신고를,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서면·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선상투표 신고(신청) 기간 및 방법]

구 분	신고(신청)기간	신고(신청)방법	접 수
거소투표 신고	5. 12.(화) ~ 5. 16.(토)	서면(우편, 방문 제출) 인터넷(구·시·군청 홈페이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군인, 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 신청 (영내·부대에 기거하는 경우)		서면(우편) 인터넷(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급적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5월 15일 까지 우체국에 접수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등은 인터넷 등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5월 26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대상이 아님.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가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과 5월 30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 허위의 거소투표 신고·투표 목적 위장전입 집중 예방·단속

중앙선관위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대리투표하는 행위,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1.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2. 군인·경찰 선거공보 열람·발송신청 안내자료 1부
3.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문 1부
4.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별도 첨부)
5. 군인·경찰공무원 선거공보 발송신청서 서식 1부(별도 첨부)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2026. 6. 3.(수)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2026. 5. 12.(화) ~ 5. 16.(토) (5일간)

신고방법: 서면(우편), 인터넷 신고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주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합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신고서식: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 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인터넷 신고: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정부24)에서 신고

※ 확인자 날인을 받은 신고서 스캔파일(PDF, JPEG 등) 첨부 필요

서면(우편) 신고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6년 5월 16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⑥(기관·시설에서 격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신고대상 ④·⑤·⑥(자가치료 격리에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6년 5월 1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5. 17.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군인·경찰 선거공보 열람·발송신청 안내자료

I 선거공보 열람

- 1 대상: 누구든지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인터넷, 모바일)를 통해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 및 공약을 확인할 수 있음.
- 2 공보게시: 2026. 5. 26.(화) ~ 6. 3.(수)

II 선거공보 발송신청

- 1 대상: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군인·경찰은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을 별도 신청할 수 있음.
※ 거소투표 대상 및 주소·거소가 동일한 군인·경찰은 제외
- 2 기간: 2026. 5. 12.(화) ~ 5. 16.(토) / 5일간
- 3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에서 신청(인터넷, 모바일)
※ 부득이한 경우 선거공보발송신청서 서면작성 후 우편발송

III 선거공보 발송신청 QnA

Q 01 거소투표대상 군인·경찰도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해야 하나요?

A 거소투표신고자는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선거공보가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님.

Q 02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선거공보를 직접 받아보시려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전 투표 또는 투표는 할 수 있음.

※ 공보발송 신청 없이도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인터넷·모바일)에서 선거공보 확인 가능

Q 03 선거공보발송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집)홈페이지에서 배너 클릭하여 선거공보 발송신청 서비스 (<https://apply.nec.go.kr>)에 접속 후 선거공보 발송신청 버튼 클릭

Q 04 주소와 거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주소는 주민등록지 주소를, 거소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부대 주소를 입력

Q 05 주소와 거소가 같은데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선거공보를 받는 곳이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경우 별도 신청없이 선거공보가 주민등록지로 발송되므로 신청대상이 아님.

Q 06 선거공보 발송신청 후 신청내역의 거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인터넷(모바일)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발송신청기간 동안 '선거공보 발송신청 메뉴'의 메인화면에서 신청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신청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수정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라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별도 연락하여 변경 가능.

Q 07 주민등록지 읍·면·동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주민센터를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됨.
※ 인터넷(모바일)에서 읍·면·동 선택 시 행정동 기준으로 선택(법정동 아님)

Q 08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에 부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되나요?

A 부대전화번호도 가능하나 개인휴대폰, 병사 수신용 공용휴대폰 등을 입력할 경우 신청결과 및 미발송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므로 가급적 휴대폰번호를 입력.

Q 09 E-mail 주소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나요?

A E-mail은 반드시 입력해야 하므로, E-mail 계정을 생성한 후 신청바람.

Q 10 인터넷,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한데 신청할 수 없나요?

A 부득이하게 인터넷, 모바일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우편발송할 수 있음. 이 경우 5. 16.(토) 오후 6시까지 구·시·군선관위에 도착해야 하므로, 가급적 5. 15.(금)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야 함.

Q 11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하거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메인화면에서 신청내역 조회 및 취소를 클릭하여 확인 또는 취소할 수 있음.(신청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입력)

Q 12 글자가 입력안되는 등 시스템 오류가 있어요

A 헬프데스크로 문의하시기 바람.(02-3487-6755, 6756)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5.12.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5.13.부터 신고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2026년 6월 3일 수요일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 2026. 5.13.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